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9. 22.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1년 9월 15일

나. 제 출 자 : 권영식 의원 외 4인

다. 회부일자 : 2011년 9월 15일

라. 상정일자 : 2011년 9월 19일 제1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권영식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조문과 일치되도록 우리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 따라서 우리구의회 조례의 관련 조문에 단서를 신설하여 근거를 명확히 함. (안 제6조)

○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에 관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신설함.(안 제7조제2항)

○ 감사 및 조사의 방법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 길고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규정된 간결한 표현을 인용하여 정비함.(안 제8조제1항)

○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이 개정되어 의회의 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기존의 불출석 및 증언 거부에 더하여 서류 미제출 및 증인선서 거부의 경우가 추가·확대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8조제4항)

○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해 준용할 수 있는 법률을 종전의 '「형사소송법」 제157조' 에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로 변경함.(안 제8조제6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헌영)

○ 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 7. 14일 개정되어 2011. 10.15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위하여 관련 조항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6조에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가 감사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함.

○ 안 제7조제2항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조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안 제8조제1항에 감사 및 조사의 방법에 관한 조문을「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1항을 인용하여 간결한 표현으로 수정함.

○ 안 제8조제4항에 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대상 범위를 개정된「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기존의 불출석 및 증언 거부에 더하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선서 거부의 경우를 추가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함.

○ 안 제8조제6항에 증인 선서의 방식을 기존의 '「형사소송법」제157조'에서「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로 개정함.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기존 7일의 범위에서 9일의 범위로 늘어난 것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자료제출 거부 및 선서거부 등에 대해서도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내용으로 개정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실효성 있는 견제 및 통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바로 고친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된 법체계나 자구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9

발의연월일 : 2011년 9월 2일
발 의 자 : 권영식 의원 외 4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2011.7.14 개정·공포(2011.10.15 시행 예정)됨에 따라 변경된 규정과 일치되도록 우리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쉽고 명확하게 하고, 오자 및 띄어쓰기를 정정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기존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 따라서 우리구의회 조례의 관련 조문에 단서를 신설하여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6조)

나.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에 관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신설함.(안 제7조제2항)

다. 감사 및 조사의 방법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 길고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규정된 간결한 표현을 인용하여 정비함.(안 제8조제1항)

라.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이 개정되어 의회의 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기존의 불출석 및 증언 거부에 더하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선서 거부의 경우가 추가·확대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8조제4항)

마.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해 준용할 수 있는 법률을 종전의 '「형사소송법」 제157조'에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변경함.(안 제8조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제5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감사)”를 “(행정사무감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의 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로, “본회의 또는”을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하거나”로 하며, “행할”을 “실시할”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기간중에 실시하되 본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를 “회기 중에 실시하며,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는”으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로, “의하여 행한다”를 “따라 실시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중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승인시”를 “승인하거나 반려하며,”로, “감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를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조사)”를 “(행정사무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을 “있으면 본회의의 의결로 영등포구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본회의 또는”을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실시할”로, “발의의원”을 “요구의원”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지체없이 본회의”를 “지체 없이 본회의의”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를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구성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며, “폐회 또는 휴회중인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의하여”를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때에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을 “조사위원회의 편성,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요령”으로 하고, “등을”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로,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승인시 의회의장은 조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며,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지”로 한다.

제4조 중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을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감사 또는조사의 대상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기관”은 “대상 기관”으로, “각 호”는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등포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등포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제5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영등포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영등포구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을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으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을 “출자하거나 출연한”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조사의 대상기관의”를 “조사 대상 기관의”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으로, “조사함에 이어서 그”를 “조사할 때에 관계”로, “상호 협의”를 “협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감사 또는조사의 대상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를 “법 제9조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사의 경우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무를 포함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를 "의장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본회의의 의결로"로, "단축할"을 "줄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사위원회가 의장에게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의 제목 "(감사 또는조사의 방법)"을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지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법령 또는"을 "법령이나"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를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로,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사"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을 "구청장, 관계 공무원"으로, "이에 응할"을 "그 요구에 따를"으로, "1일전"을 "1일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지에 의하여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제5항 중 “의장 또는”을 “의장이나”로,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을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으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증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을 “증인 선서의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를 “증언·진술을 하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을 원하지 않거나,”로,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을 “요구한 경우에는 본회의나 해당”으로, “금지시키거나”를 “금지하거나”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요구한 때에는”을 “요구하면 의회사무국장은”으로, “얻어 이를”을 “받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1조제4항에 따라”로, “기타의”를 “그 밖의”로, “자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자에게는 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실비를”을 “실제 비용을”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감사 또는조사의 장소)”를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로 하고, 같은 조 중 “본회의, 본회의 감사”를 “본회의나 감사위원회”로,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감사 또는조사결과의 보고)”를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중 “영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중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적사유”를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로, “알면서도 이를”을 “알면서도”로, “아니하거나,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의회회의규칙”을 “않거나, 영 제47조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이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의회위원회조례와 의회회의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 그 밖에 ----------.
제2조(감사) ①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제2조(행정사무감사)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의 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하거나 ---------- 실시할 ------.
②제1항의 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되 본회의 상임	② ---------- 회기 중에 실시하며, 소관 상임

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는 ----------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 따라 실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승인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 승인하거나 반려하며, ----------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 ----------.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제3조(행정사무조사) ① ---------- 있으면 본회의의 의결로 영등포구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
②제1항의 조사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실시할 -------- 요구의원 ----------.

③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이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인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 지체 없이 본회의의 ------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구성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때에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 -----.
④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④ ----- 조사위원회의 편성,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요령, -------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 ---------- 받아 ---------.
⑤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승인시 의회의장은 조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 ---------- 승인하거나 반려하며,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지---------.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	제4조(사무보조자) ---------- ----------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사무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국 소속 공무원 ----------.
제5조(감사 또는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	1. 영등포구
2.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등포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2.「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등포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영등포구가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3. ---------- 법 제146조에 따른 ----------
4.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영등포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영등포구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 ---------- ---------- ---------- ---------- 경우만 해당한다.
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5. ----------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

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영등포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 출자하거나 출연한 ----. ---------- ---------- ---------- 한정하여 -------.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조사 대상 기관의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 ---------- 조사할 때에 관계 ---------- 협의 ----------.
제6조(감사 또는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단서 신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 법 제9조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경우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무를 포함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의장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본회의의 의결로 ---------- ---------- 줄일 -------.

<신 설>	② 조사위원회가 의장에게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제8조(감사 또는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지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영등포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	② ---------- 법령이나 ----------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 조사 ----------.

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구청장, 관계 공무원 ---------- --- 그 요구에 따를 ---------- ----- 1일 전 ----------.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지에 의하여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⑤ 의장이나 ---------- ----------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 ----------.

⑥증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증인 선서의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
제9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 증언·진술을 하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을 원하지 않거나, ---------- ---------- ------ 요구한 경우에는 본회의나 해당 ---------- --- 금지하거나 ---------- ---------- ------.
②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② ---------- ---------- 요구하면 의회사무국장은 ----- 받아 ----------.
③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③ -- 제41조제4항에 따라 ---------- ---------- 그 밖의 ---------- 자에게는 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실제 비용을---------.
제10조(감사 또는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본회의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 ---------- ---------- 그 밖의 ----------.
제11조(감사 또는조사결과의 보고) 영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른 ---------- ---------- ----------.
제12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의회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2조(징계) ---------- ----------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 ---------- 알면서도 ---------- 않거나, 영 제47조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이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
제13조(준용규정 등)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위원회조례와 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준용규정 등) ① 감사위원회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②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	② ---------- 필요한 ---

항은 의회의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정할 수 있다.